

【발표 2】



무형유산에 있어서의 공유와 차이 : 인류의 공유 유산으로서의 다 국가 무형유산과 문화다양성

박 상 미 |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유네스코의 유산보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상당히 성공적이고, 가시적, 구체적 성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유네스코의 보호 프로그램들 덕분에 유산들은 더 잘 보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인류사회는 공동의 자산으로서의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문화간 이해와 대화를 촉진하게 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냈다. 보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유산관광 (heritage tourism) 영역의 경우, 특정 유산이 유네스코의 지정을 받아 목록에 오르는 경우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유네스코 유산보호 사업들은 여러 해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각 지역의 환경적 차이나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화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도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고, 공동체, 환경,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책임감을 제고하게 되었다.

유네스코와 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유형유산 보존사업, 자연유산 보호사업 등과 비교할 때, 무형유산 보호사업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가 1972년에 채택한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는 보호의 주요 대상에 무형유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89년이 되어서야 유네스코는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이하 “권고안”)를 채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 “권고안”은 이후 더욱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은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이하 “결작”) 사업의 기초가 된다. 결작 목록을 위한 선정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그 첫 해인 2001년에는 19 건이 선정되었고, 두 번째인 2003년에는 28 건이, 그리고 마지막 선정인 2005년에는 총 43 건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작 선정 사업은 일반 대중들이 무형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공헌하였고, 무형유산의 가치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반면, 무형유산의 일부를 “결작”으로 선정함으로써 문화간 위계화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은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비준한 국가의 수가 30개국을 넘은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06년 4월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총회 채택 후 10년째 되는 해인 2013년 4월 현재 15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당 협약은 유네스코의 가장 성공적인 협약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협약이 발효되면서 이전의 결작 목록에 있었던 무형유산은 대표목록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편입되었다. 협약에 근거한 다른 목록으로는 “위기에 처한 유산 목록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과 “모범 보호사례 목록”이 있다. 협약은 무형유산 보호의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각 국가가 공통으로 가지는 문제의식과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무형유산과 유형유산

유형유산에 비해 무형유산은 사라져 버리기가 쉽고, 서구화, 전지구화 등의 외부로부터 기인한 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무형유산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무형유산이 속한 공동체가 다 이상 그 유산을 정상적으로 연행하지 않는 순간 그 생명력을 다해 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무형유산은 구전으로 전승되며, 매번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연행될 때마다 재창작의 과정을 거친다. 무형유산의 기본적인 골격이 공동체의 성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무형유산의 유연성, 재창조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 시점에서 여러 형태의 유산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유산은 “변이 (variation)”로 인식되며, “정통과 아류”의 위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국가나 전문가 등에 의해 무형유산의 “목록화 (inventory making)”가 되는 경우에는, 기록 당시의 형태로 무형유산의 “화석화 (fossilization)”가 일어날 수 있다. 만일 다양한 형태 중 한 가지만이 목록화 되는 경우, 기록된 것은 정본이 되고, 나머지는 이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목록화 자체가 무형유산을 탈 맥락화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이는 목록화 과정에서 유산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유산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생태적 맥락이 함께,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일어난다.

국가 무형유산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의 경우, 유형유산에 비해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국가간의 경계는 문화의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란 한 사회 안에서 동질적이지 않고 그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회 안에 다양한 견해와 행태가 공존하는데, 이는 사회 성원들이 가진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조건들을 반영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모여서 그 사회의 문화적 경관을 이루는 것이다. 무형유산은 문화 전파나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퍼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무형유산이 처음 존재했던 곳과 이후에 퍼진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무형유산의 경우 다양한 이유와 경로로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국가 무형유산이란 예외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를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행위주체자로 설정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사업은 무형유산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있어 유산의 확인, 선정, 보호에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심적이다. 유네스코에 다 국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등재신청을 위한 초기 교섭 단계에서 공동 등재 가능성이 있는 국가간의 문화외교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다 국가 등재 신청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무형유산을 국가단위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지니는 문제점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유산과 국가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정치적 측면, 국가 정체성에 있어 소수자의 문화가 가지는 주변적 위치, 소수자 문화에 대한 자기 이국화 (self-exoticization)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나타난 다 국가 등재 관련 사항

2003년 협약의 “실행지침 (Operational Directive)”에는 무형유산을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전체 30 쪽의 실행 지침 중 다 국가 등재에 관한 것은 총 반 쪽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무형유산의 경우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임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침들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실행 지침 중 다 국가 등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5 Multi-national files

13.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jointly submit multi-national nominations to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hen an element is found on the territory of more than one State Party.

14. One or more States Parties may, with the agreement of each State Party concerned, propose inscription on an extended basis of an element already inscribe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ubmit together a nomination showing that the element, as extended, satisfies all of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1 for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paragraph 2 for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uch a request shall be submitte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rocedures and deadlines for nominations. In the event that the Committee decides to inscribe the element on the basis of the new nomination file, the new inscription shall replace the original in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Committee, on the basis of the new nomination file, decides not to inscribe the element, the original inscription shall remain intact.

15.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ubmission of subregional or regional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as well as those undertaken jointly by States Parties in geographically discontinuous areas. States Parties may submit these proposals individually or jointly.

*16. States Parties may submit to the Committee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jointly submitted by two or more States Parties.
(End of citation)*

Operational Directives, 2003 UNESCO 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공동 유산

아마도 다 국가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공동” 유산을 정의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한 무형유산의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들을 같은 유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산의 문화적 의미까지 같아야 같은 유산인가?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며 문화인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같은 유산인지를 파악하는 주요 근거를 형태의 유사성으로만 본다면 이는 문화적 요소들의 탈맥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클리포드 기어츠(Geertz)가 1973년에 출간한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에서 든 예를 보면 이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눈을 깜빡이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이유와 의도를 담을 수 있다. 우선 그것은 같은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 특정인과만 교감하고 있음을 해당인에게 비밀스럽게 알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표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으며 대화 상대자와의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중요한 차이들을 무시하고 눈깜빡임을 하나의 행동이라고 단정한다면 이는 맥락을 무시한 성급한 일반화일 것이다.

공동유산은 문화 전파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인적, 물적, 정보의 대량, 신속 이동을 동반하는 세계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산이 원래 존재했던 곳과 나중에 전파된 곳들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류” 또는 “원형”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고, 개인, 공동체, 국가들이 각각 자신들이 원류라는 주장을 하고 이것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유산 소유권의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유산은 공동체나 국가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논쟁은 매우 심각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예로 2005년 결작 목록에 올랐던 “강릉단오제”를 둘러싼 논란을 들 수 있는데, 일부 중국인들이 단오가 중국에서 유래한 날이라는 것을 들어 강릉단오제가 한국의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 속에서는 강릉단오제가 얼마나 지역의 토착적 문화 환경 속에서 독특하게 형성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식민 지배, 전쟁 등의 역사적 경험이 있고,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왔음을 감안할 때 무형유산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앞으로 무형유산의 다 국가 공동 등재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 등재를 위한 협력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에 관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측도 가능하다. 특히 공동 등재의 성공적인 결과는 이

후의 다방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 무형유산 사업에 있어서 해결할 문제들과 전망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사업에서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간의 문화적 주도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여러 논쟁들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국가 간의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경쟁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국가 내의 주류와 소수자 문화 사이의 불평등한 면을 답습할 수도 있다. 평등하다고 할 수 없는 정치 경제적인 위계가 문화적 영역에 반영될 수 있다.

국가 무형유산 공동 등재 사업은 정치적,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는 긴밀한 협력을 요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초기 단계에서 협력의 주체는 국가 정부가 될 것이다. 만약, 해당 유산이 한 국가에서는 주류의 문화이고 또 다른 국가에서 주변적인 것일 경우, 특히 다문화, 다민족 사회의 경우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공동 등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일부 유산의 경우 소수인 이민자들이 전파시킨 것일 수도 있으며 이들이 주류 사회, 출신 국가 등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미묘한 입장을 고려할 때 유산의 등재와 보호 사업에서 정치적인 측면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무형유산은 이민, 전파, 개별적 창조 등의 다양한 이유로 여러 국가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 집단 내에서, 그리고 집단들 사이에서 문화란 (무형유산을 포함) 항상 협상되고, 타협되고,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경계를 넘는 것은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 더욱 활발해져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들은 더욱 널리 공유되고, 섞이고, 공존하게 되었다. 이 결과로 한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은 증가했고, 세계 차원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무형유산보호 사업은 절실한 것이다. 무형유산의 기본적 특성이 다 국가 분포라는 현실과, 문화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무형유산의 다 국가 공동 등재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공동 등재 과정을 통해 국가간 문화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간의 문화 이해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가 모여, 인류 사회가 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상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REFERENCES

(in English)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Appadurai, Arjun, 2000,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ak, Sangmee 201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Tourism in Korea,"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ocal Communities in East Asia*, edited by Liu Tik-sang, Hong Kong, China: South China Research Center,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ong Kong Heritage Museum, . pp. 75-82.

_____ 2008 "Popularization and Transmission: Recent Change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he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lear Water Bay, Kowloon, Hong Kong, February 23-26.

_____ 2008 "Imagining and Appropriating the Global: Gangneung Danoje and the Local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UNESCO's Proclam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per presented at "Consuming Korean Cultur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October 13-15, 2006, Honolulu, Hawai'i, U.S.A.

_____ 2003a "Local Development and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roceedings of the 2003 UNESCO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ugust 2003.

_____ 2003b "Heritage is Good to Think: Politics of Identities in Hahoe Village, Andong,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102n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U.S.A. November 19-23, 2003.

_____ 2002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kyo, March 12–26, 2002.

_____ 2002b "Negotiating the Meanings of Traditional Culture: Politics of Place Identities in Insa-dong, Seoul", paper presented at *the 6th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Seoul, June 18–20, 2002.

_____ 2001 "Local Festivals and Traditional Cultur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7th UNESCO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for Living Human Treasure System, Seoul and Gangneung, October, 2001.

_____ 1998a "Anthropological Studies of People, Place, and Culture, and The Implications for Area Studies,"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 no.2.

_____ 1998b "Insadong Alley: Constructing Traditions and Tasting The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Philadelphia, PA November.

Geertz, Clifford. 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In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3–30

Hobsbawm, Eric and Terrence Ranger, eds., 1984,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elli, Roger, 2009 "Cultural Plurality: "Cultural Plurality: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ast Asia" in the *Proceedings of the 2009 International Forum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ast Asia*, Seoul, Korea pp. 237 – 242.

Munjeri, Dawson. 2004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from difference to Convergence" *Museum International*, May 2004, vol.56 issue 1/2 pp. 12–20.

Yamashita, Shinji 2009 "Cultural Heritage Contested: a Perspective from the Anthropology of Cultural Resourc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 the *Proceedings of the 2009 International Forum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ast Asia*, Seoul, Korea pp. 237 – 242.

(in Korean)

김인규 2012 “매사냥을 통해 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공동 등재의 사례, 무형 문화유산 보호 심포지엄 무형문화유산 정책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당진 6월 21일, 79-84 쪽.

박상미 2011 “무형유산과 보존원칙: 논의의 쟁점과 새로운 지평” 『세계유산의 보존가치: 2011 세계유산포럼 자료집』, . 77 - 86.

_____ 2006 “문화유산 논의에 있어서의 토착성과 초국가성” 『사회과학논집』 제 24 권 1 호.

_____ 2003 “전통문화의 정체성 논의와 문화정책: 안동하회마을의 전통역사마을 추진 가능성” 『사회과학논집』 제 23 권 1 호.

박성용 2012 “2003 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이행과 국제협력” 무형문화유산 보호 심포지엄 무형문화유산 정책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당진 6 월 21 일 25-41 쪽

임돈희 2012 “세계무형문화유산정책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심포지엄 무형문화유산 정책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당진 6 월 21 일 15 - 22 쪽

한경구 2009 “동아시아 공동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지역 내 문화정체성”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25-42